

[별표 5] <개정 2026.8.13.>

공공단체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제43조의10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1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